

【 9 】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7.11. 6.

제 출 자 : 장재훈의원외6인

제안이유

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10월 4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일부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게 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조례상의 일부조항을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조문에 맞게 수정함 (안 제1조, 안 제2조)

양주시 조례 제 호

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
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1조 본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2조의2 및 「동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15조의 3의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3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5조”로 한다

- 제2조중 제2호에 “영 제15조”를 “영 제3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2조의2 및 「동법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직무”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. 2. “의정활동비”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. 3. “유족”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(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), 자녀, 부모를 말한다. 	<p>제1조(목적) ————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4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5조 —————</p> <p>제2조(정의) —————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————— 2. ————— 영 제33조 ————— 3. —————